

# FTA BRIEF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에 대한  
미국의 품목분류 기준 및 시사점

- Jing Mei Automotive (USA) v. United States  
(CIT No. 13-00321) 판결을 중심으로

Vol. 02  
APRIL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 사진 출처 : Freepik

### 관세청, 특허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대상 품목의 경우 ① 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 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2026년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 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 조치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종류	세율(%)	비고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100	①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은 15%, 영국산은 10%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0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	-	0	-

주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였으나 별도 무역협의를 마친 한국·일본·유럽에는 15%를 적용함

해당 연계표는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2) FTA 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에 대한 미국의 품목분류 기준 및 시사점

- Jing Mei Automotive (USA) v. United States (CIT No. 13-00321) 판결을 중심으로



[ 글\_한현선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 Check point

- ✓ 특정 차량의 전용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착구(부분품)는, 해당 부분품이 없어도 차량이 통상적인 주행 및 기능을 수행하다면,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에 분류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에 분류될 수 있음
- ✓ 현재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25%)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본 글을 통해 미국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의 분류 판단기준을 살펴봄으로써 관세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함

## 1.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분품은 품목분류 관점에서 기능적 측면과 재질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수입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2026년 4월 기준)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분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제품(제3926호)으로 분류되는 편이 관세 부담 낮은 상황이다.

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에 대한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판정 사례에서 판단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Jing Mei Automotive (USA) v. United States (CIT No. 13-00321)' 판례를 중심으로, 특정 차량에 부착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자동차 부착구가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가 아닌 제3926호(플라스틱 기타제품)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판례 개요 및 쟁점 물품



해당 판례의 경위와 쟁점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 사례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 약 11년(2013. 8. 31.~2024. 2. 26.)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 부착구의 품목분류 견해 차이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미국 내 수입자인 Jing Mei Automotive(이하 '수입자')이며, 피고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이다.

수입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중국으로부터 33개의 크롬 도금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였다. 수입자는 쟁점 물품의 적정 세번으로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을 주장하였으나, 법원과 CBP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수입자는 수입 물품인 33개의 크롬 도금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물품의 기능에 따라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카테고리 1~3은 내장 트림, 도어 핸들 및 부분품 등(이하 '도어 핸들'), 외장 트림이며, 모두 플라스틱 기반에 크롬이 도금된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부품 간 연결·공백 메우기·외관 마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카테고리 4는 미러 스캘프, 카테고리 5는 엠블럼과 차축 커버이다.

이 가운데 법원의 핵심 판단 대상은 카테고리 1~3 물품(내외장 트림 및 도어 핸들)과 카테고리 5의 차축 커버(이하 '쟁점 물품')이다.



수입 물품 개요

구분	주요 물품	이미지(예시)	주요 기능	최종 판정	
카테고리 1	내장 트림 <sup>2)</sup> (노브, 링 등)	 <p>《신상품종류》 《신상품종류의 Air Vent 손잡이에 장착된 사면》 ※ 동일한 인 손잡이 개량에의 일원적 부분</p> <p>품목분류1과-508</p>	부품 간 간격 메우기, 소음 방지, 실내 마감 장식	제3926.30호 (CBP 勝)	
카테고리 2	도어 핸들	 <p>품목분류3과-1618</p>	도어 개폐 관여, 실내외 마감 장식		
카테고리 3	외장 트림 (그릴 서라운드)	 <p>품목분류1과-103</p>	전면부 공백 메우기, 외관 마감 장식		
카테고리 4	미러 스칼프	 <p>품목분류1과-360</p>	특정 차종용 미러 하우징		제87류 (합의)
카테고리 5	엠블럼	 <p>품목분류1과-1470</p>	차량 외관 장식		제39류 (합의)
	차축 커버 (Axle Cover)	 <p>품목분류1과-3012</p>	차축 이물질 유입 방지, 외부 장식	제8708.70호 (수입자 勝)	

1) 해당 시점에는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 2.5%)에 플라스틱 제품(제39류, 2.5~6.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2) 카테고리 1과 3에서 사용되는 '트림'이란 차량 내부 패널에서 장식용이거나 틈을 메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함

### 3.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및 논리



#### (1) 카테고리 1~3의 물품(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분류)

법원은 쟁점 물품의 적정 세번을 판단하기 위해, 쟁점물품이 ㉠제17부 수송기기에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5부 제8302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위 3가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제15부의 제8302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쟁점 물품이 제17부 수송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여부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의 품목분류 판정을 위해,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이 속하는 차량 관련 물품(제17부 수송기기)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해당 규정에서(제17부 주 제2호 나목)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수송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쟁점물품이 '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물품'에 해당할 경우, 제17부 수송기기 관련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다.

#### ● 제17부 및 제15부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제17부 주 제2호 나목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제17부 총설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 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제15부 주 제2호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17부에서 제외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에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제8302호)<sup>3)</sup>가 포함된다.

이에 법원은 쟁점 물품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제15부의 제8302호와 유사한 성격의 물품인지를 검토한다.

## ㉔ 쟁점 물품이 제8302호의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와 유사한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이 쟁점물품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제15부의 제8302호와 유사한 성격의 물품 인지를 검토한 이유는 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제15부의 차체용 부착구·장착구 관련 호(제8302호)의 용어와 해설을 검토하여 쟁점 물품이 해당 호(제8302호)에 속하는 물품<sup>4)</sup>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쟁점 물품이 틈새를 메우고, 자동차 부품을 결합 하며, 외관을 마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제830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CBP 사전심사 판정 사례와 미국의 사전적 정의를 참조하였으며 부착구·장착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부착구**: 다른 부품을 연결·조정하거나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 또는 장식물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
- ▶ **장착구**: 받침,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는 장식적 기능을 위해 장착되는 것

또한 법원은 추가적으로 카테고리 2 물품(도어 핸들)에 대해서는 관련 호(제8302호) 해설에서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이 분류 예시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카테고리 3 물품(외장 트림)에 대해서는 동 해설(제8302호)에서 열거된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과 유사한 물품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 ● 제8302호 해설 일부

### 제 8302호해설 中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bracket)·파스닝(fastening) 부착구·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제8302호)는 쟁점 물품의 최종 분류 호가 아니라, 쟁점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392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검토되었음

③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An Essential Part of the Structure) 여부 검토

쟁점 물품이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제8302호 해설에서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제8302호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차량의 필수 구조를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부품품(제8708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원은 쟁점 물품의 완성 차량 구조의 필수 부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카테고리 1~3 물품(내외장 트림 및 도어 핸들)이 차량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수입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규정	내용
수입자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자는 해당 물품들이 단순한 장식용 또는 보조적 부속품이 아니라, 소음 방지, 승객 보호, 공기 순환 등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의 구조적 필수 부품에 해당한다고 주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4a4a8a;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카테고리 1 (내장 트림)</b>: 어두운 상황에서 운전자를 위해 빛을 반사하며, 내부 소음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와 승객을 날카로운 실내 표면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li> <li>✓ <b>카테고리 2 (도어 핸들)</b>: 다른 부품과 결합되어 완전한 차량 문손잡이가 되어 차량 문 개폐 기능 작동을 수행</li> <li>✓ <b>카테고리 3 (외장 트림)</b>: 엔진으로 공기를 여과하며 크럼플 존<sup>5)</sup> 내 차량 안전의 일부 기능 수행</li> </ul> </div>
법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은 '해당 부품이 없어도 기계가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구조적 필수성 검증</li> <li>- 법원은 카테고리 1~3 물품(내외장 트림 및 도어 핸들)이 공통적으로 차량 사용에 일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차량 주행 기능이나 구조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부속품(Accessory)에 불과하다고 판단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4a4a8a;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카테고리 1 (내장 트림의 용도)</b>: 부품 간 간격 메우기, 소음 방지, 실내 마감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원 판단)</b> 수입자가 법원에 제출한 물품의 사진 및 견본<sup>6)</sup>을 통해 해당 물품이 부속품이며, 완성차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님을 확인</li> </ul> </li> <li>✓ <b>카테고리 2 (도어 핸들의 용도)</b>: 도어 개폐 관여, 실내의 마감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원 판단)</b> 문의 작동에 해당 부품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부착된 문의 구조에 필수적인 부품은 아님</li> </ul> </li> <li>✓ <b>카테고리 3 (외장 트림의 용도)</b>: 전면부 공백 메우기, 외관 마감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원 판단)</b> 실제로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에어 필터(Air Filter)'로써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sup>7)</sup> 또한 차량이 안전을 위한 구조적 견고함을 더하지 않음</li> </ul> </li> </ul> </div>

5) 전면 또는 후면 충돌 발생 시 적정한 강성으로 꺾이고 찌그러지면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 전면 엔진룸 및 후면 트렁크가 이에 해당.

6) 제출된 사진 등은 공개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7) 라디에이터 그릴은 공기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쟁점 물품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량 전면부를 연결하는 서라운드에 해당

위의 ①, ②, ③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이 제17부의 수송기기의 부분품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며,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분류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카테고리 5의 물품(제8708호로 판정)**

앞서 살펴본 카테고리 1~3 물품(내·외장 트림 및 도어 핸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으로 분류되었으나, 마지막 쟁점 품목인 카테고리 5(차축 커버)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차축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더라도, 차체용 장착구·부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의 특정 구조에 직접 작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물품 군의 핵심 차이는 해당 물품이 차체용 장착구·부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플라스틱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제8302호의 용어는 차체(Coachwork)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를 포함한다. 반면 차축 커버는 차체가 아니라 차축(Axle) 끝에 부착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법령 문구상 차체용 장착구·부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 제8302호의 용어

제8302호의 용어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 차체와 차축의 구분

구분	설명	이미지(예시)
차체 (Coachwork)	자동차, 전차 등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동력부, 차륜 등은 포함되지 않음	 품목분류1과-1258
차축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품목분류1과-3405

\*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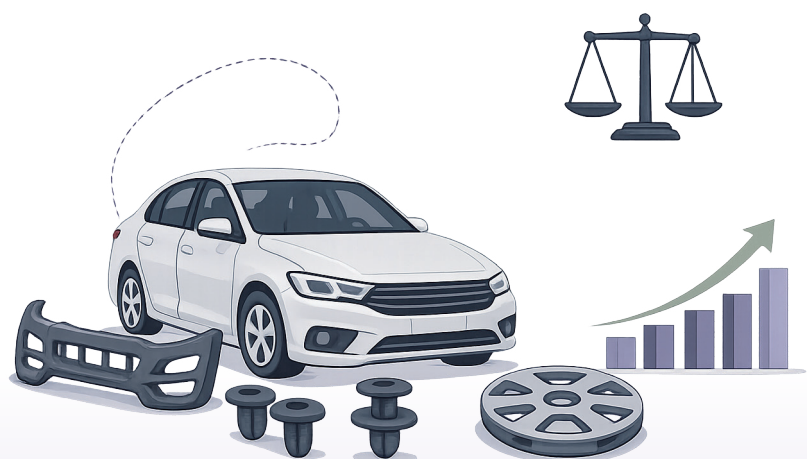
또한 차축 커버는 단순한 외관 장식품에 그치지 않고, 차축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차량의 특정 구조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보다는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하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유사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로 분류한 CBP 사전심사 판정 사례(NY 181035 등)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사례에서 CBP는 원형 플라스틱 휠 캡이 ㉠차량 사용에 적합하고, ㉡휠과 휠 허브의 접합부에 먼지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용 부착구 중 ㉠차체용 장착구·부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량의 특정 구조에 결합되어 이물질 차단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자동차 부착구의 제3926호와 제8708호 분류 조건

분류	기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제품 (제3926호)	① 물품의 기능이 범용성 부분품인 부착구·장착구에 해당되며, ② 완성차의 구조적 필수 부품에 해당되지 않고 ③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
자동차 부분품 (제8708호)	①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인 부착구·장착구에 해당되지 않거나 <sup>8)</sup> ② 상기 ①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완성차의 구조적 필수 부품에 해당되는 경우



8) '차축 커버'의 경우 선행 조건인 '범용성 부분품인 부착구·장착구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완성차의 구조적 필수 부품 해당 여부에 대해선 미검토

#### 4. 결론 및 시사점



동 판례 분석을 통해 CBP와 법원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부착구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 또는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구분할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물품이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특정 차량·제조사에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기능, 범용성 부분품인 차체용 부착구·장착구(제8302호)와의 유사성, 구조적 필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차량의 내·외장 마감, 부품 간 연결, 틈새 보완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제3926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차체용 장착구·부착구(제8302호)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의 특정 구조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은 단순히 특정 자동차 전용 설계 여부에 의존하기보다, 물품의 실제 기능과 구조적 역할, 관련 호의 용어와 해설, CBP 및 법원의 판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미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세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고관세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본 분석은 Jing Mei Automotive (USA) v. United States (CIT No. 13-00321)판결문과 2026년 4월 기준 국제 통상 환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품목분류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



#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공공누리



공공저작



상업용금지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